

드라마 『펜트하우스』 속의 문서위조죄

드라마 속 한 장면을 통하여 문서위조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속 한장면

드라마 『펜트하우스1』의 민설아는 보육원 출신으로 유기견 설탕이와 단둘이 살며 설탕이의 병원비를 구해야 하는 사정에 처했습니다.

이후 민설아는 헤라펠리스 고액 수학과외에 지원하기 위해 재학증명서를 위조하고,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서 수학 과외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재학 증명서를 위조하고 가짜 신분증을 만든 민설아의 행위는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이러한 범죄행위를 ‘문조위조죄’라고 일컫습니다.



문서위조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문서를 행사하거나 부정행사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231조를 살펴보겠습니다.

1. 가짜 신분증을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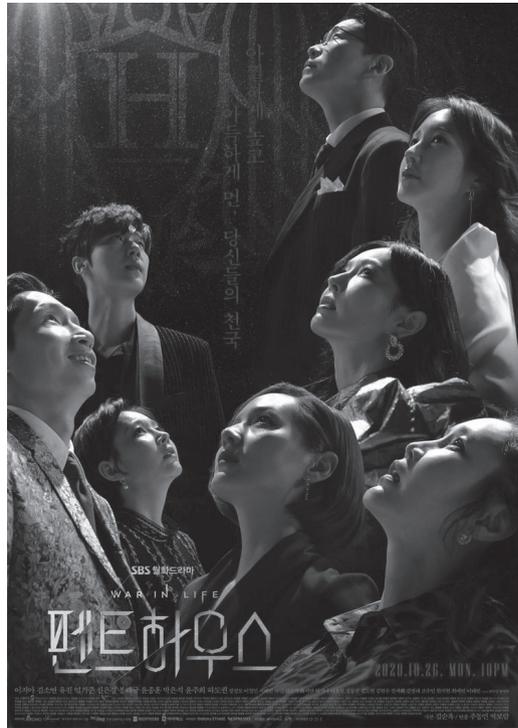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내지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가짜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에는 이렇게 처벌됩니다.

이번에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甲 시설운영위원회’의 대표로 선출된 후, 주민센터에서 가져온 행정용 봉투에 ‘甲 시설운영위원회’ 한자 직인과 한글 직인을 날인한 다음,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중앙에 있는 ‘용도’란 부분에 이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인감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촬영해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사진을 게재하였습니다.



판례는 『중국인인 피고인이 콘도미니엄 입주주민들의 모임인 ‘甲 시설운영위원회’의 대표로 선출된 후 甲 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 기관에서 실체를 인정받아 직인이 등록되고 자신은 단체 대표로 인증을 받았다는 등 甲 위원회가 대표성을 갖춘 단체라는 외양을 작출할 목적으로, 주민센터에서 가져온 행정용 봉투의 좌측 상단에 미리 제작해 둔 甲 위원회 한자 직인과 한글 직인을 날인한 다음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중앙에 있는 ‘용도’란 부분에 이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인감증명서 1매를 작성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 파일을 甲 위원회에 가입한 입주주민들이 참여하는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게재하였다고 하여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조 여부,

즉 공문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지는 피고인이 만든 문서를 기준으로, 그리고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행사의 상대방으로 구체적으로 예정한 사람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만든 문서 자체를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춘 일반인이 보았을 때 진정한 문서로 오신할 만한 공문서의 외관과 형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만든 문서의 용도란은 인감증명서의 다른 부분과 재질과 색깔이 다른 종이 붙어 있음이 눈에 띄고, 글자색과 활자체도 다르며, 인감증명서의 피고인 인감은 검정색인 반면 피고인이 용도란에 날인한 한자 직인과 한글 직인은 모두 붉은색이어서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사람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만든 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위 위원회를 등록된 단체라거나 피고인이 위 단체의 대표임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가 아님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만든 문서가 공문서로서의 외관과 형식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사진촬영한 파일을 단체대화방에 게재한 행위가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공문서위조 판단의 객체 및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즉, 피고인이 만든 문서가 공문서로서의 외관과 형식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이를 사진촬영하여 그 파일을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게재한 행위 역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2. 국공립대학을 제외한 사립대학의 재학증명서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학증명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이렇게 처벌됩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다른 서류에 찍혀 있던 甲의 직인을 칼로 오려내어 풀로 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甲 명의의 추천서와 경력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처럼 행사하였습니다.

판례는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

지 여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 및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문서가 그 명의자인 공소의 2가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한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사실관계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문서의 기재 및 형상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문서는 피고인이 직인을 오려붙인 흔적을 감추기 위하여 복사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문서가 갖추어야 할 형식을 다 구비하고 있고,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하면 그 외관에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음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이므로, 일반인이 그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8361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즉, 위 문서는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신분증 위조, 장난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하지만 명백한 공문서위조입니다. 공문서와 사문서 위조 모두 문서의 신뢰성을 해쳐, 사회 공공의 해악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무거운 죄질의 범죄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 이야기)